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가단291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구

피 고 유한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12. 22.

판 결 선 고 2023. 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그 중 50,000,000에 대하여는 2021. 6. 22.부터, 나머지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6. 29.부터 각 2022. 12. 22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선아

별지